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288

발의연월일: 2021. 8. 27.

발 의 자: 송언석・金炳旭・박덕흠

임이자 • 권명호 • 정희용

김영식 · 김정재 · 최형두

양금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소비성 업종에 주로 지출되며, 접대비 중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 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키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필요경비 산입한 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285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활동촉진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액	적 용 률
가. 100억원 이하	1만분의 50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1만분의 30]
다. 500억원 초과	1억7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1만분의 5]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활동촉진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	제35조(<u>기업활동촉진비</u> 의 필요경
입) ① 이 조에서 " <u>접대비</u> "란	비 불산입) ① <u>기업</u>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활동촉진비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	
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	
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	
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	
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	
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u>.</u>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2
지출한 <u>접대비</u> 중 대통령령으	<u>기업활동촉진비</u>
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u>접</u>	
<u>대비</u>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u>기업활동촉진비</u>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회	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	세서
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ス
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칭	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u>접대비</u>

가. · 나. (생략)

-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 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 는 <u>접대비</u>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 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 는 접대비

귀시치도 크게
<u>기업활동촉진</u>
<u>荆</u>
1
기업활
동촉진비
가.·나. (현행과 같음)
2
<u>기업활</u>
<u>동촉진비</u>
3
기업활동촉진비
4
기업활동촉진비

-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u>기업활동촉진비</u>
1. (현행과 같음)
2

<u>수입금액</u>	<u>적 용 률</u>
<u>가. 100억원</u> <u>이하</u>	1만분의 30
나. 100억원	3천만원 + [(수입금
<u>초과 500억</u>	<u>액 - 100억원) × 1</u>
<u>원 이하</u>	만분의 20]
F)	1억1천만원 + [(수
<u>다. 500억원</u>	입금액 - 500억원)
<u>초과</u>	× 1만분의 3]

④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 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⑤ <u>접대비</u>의 범위 및 계산, 지 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수입금액</u>	적 용 률
<u>가. 100억원</u> <u>이하</u>	1만분의 50
나. 100억원	5천만원 + [(수입금
<u>초과 500억</u>	<u>액 - 100억원) × 1</u>
<u>원 이하</u>	만분의 30]
다. 500억원	1억7천만원 + [(수
	입금액 - 500억원)
<u>초과</u>	× 1만분의 5]

①
<u>기업활동촉진비</u>

⑤ 기업활동촉진비
,